

투트랙으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 출원 가이드

Graphical
User
Interface
Design
Filing Guidebook

보호트랙1

화상디자인

화상디자인은 국제적 보호추세와 뉴미디어 디자인보호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물품과 상관없이 기능조작과 기능발휘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보호합니다



Check 1

심사 일부심사

Check 2

14류

Check 3

용도기재
출원서에 '000용 화상'으로 용도를 기재합니다

Check 4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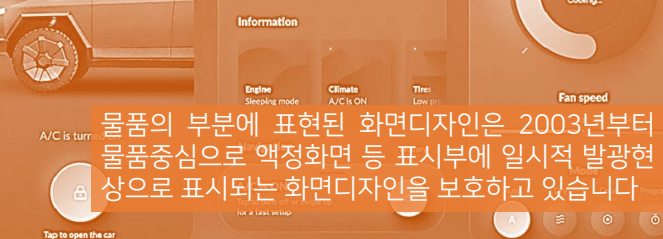
Check 5

정보검색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메인화면용 화상
메뉴선택용 화상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등 명칭기재

보호트랙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29화면디자인



Check 1

심사 일부심사
물품분류에 따라 심사와 일부심사로 구분됩니다
일부심사(1류, 2류, 3류, 5류, 9류, 11류, 19류)

Check 2

10류(시계) 12류(자동차)
 14류(컴퓨터, 휴대폰) 21류(완구) 등
화면디자인이 구현되는 물품분류를 기재합니다.

Check 3

전체디자인 부분디자인

Check 4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공기청정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태블릿PC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공작기계용 단말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 등 명칭기재

도면작성 예시

CASE 1 화상디자인

물품 형상을 별도로 도시할 필요없이 화상디자인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실선/파선, 채색, 명도차이, 영역표시 등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
(자동차 주행표시용)



[도면1.1] 전체디자인



[도면1.1] 부분디자인

CASE 2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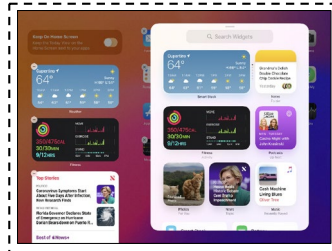
정면을 기준으로 물품 형상(파선)과 함께 화면디자인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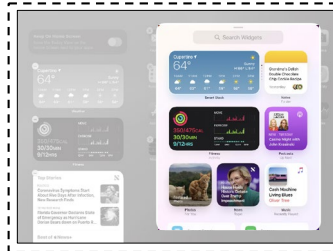
물품형상
(디스플레이 패널)



화면디자인



[도면1.1] 전체디자인



[도면1.1] 부분디자인

CASE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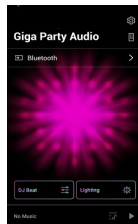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순서대로 스냅샷형태로 표현해야 하며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적화면디자인도 물품형상을 도시한 상태로 동일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도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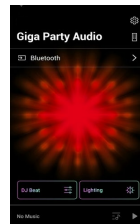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참고도면1.1]
동영상파일
(MPEG
AVI
WMV
SWF)

Q & A

1. 새로운 화상디자인은 언제부터 출원이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21일 출원되는 디자인부터는 1)화상디자인과 2)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홀로그램이나 프로젝션형태의 화상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 아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에서는 물품성과 상관없이 화상 그 자체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형태의 화상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출원해야 하나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화상디자인도 기능 구현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 또는 동적화상 형태로 디자인의 특징을 도면에 표현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콘, 캐릭터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나요?

아이콘이나 캐릭터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하는 데에 문제없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경우에는 기능조작이나 기능발휘에 관련된 화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능과의 연관성이 합리적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게임화면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나요?

게임배경이미지나 아이템 등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게임조작 관련 화상은 화상디자인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4동
문의: 042) 481-5766